

14.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및동법시행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1999-202호 1999. 6. 7.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99. 4. 15. 법률 제5,96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신기술 지정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 가. 건설신기술지정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행 5~10년인 신기술 보호기간을 최초 지정시에는 3년 이내로 하고, 지정후 시공실적등을 감안하여 7년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중 건설공사의 설계심의기능을 폐지함.
-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와 건축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 라. 정부의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건설표준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함.
- 마. 용역 및 시공평가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을 용역은 1.5억원이상에서 2억원이상으로, 건설공사는 50억원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

바.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공사발주 익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우수건설업자 지정시한을 건설공사 준공 익년 4월말까지로 조정하고, 지정결격요건에 안전점검 소홀 등으로 인한 행정제재를 추가함.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가. 2억원미만 소규모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업체선정제도를 현행 제한적 최저가 제에서 적격심사제로 전환하여 용역참여업체의 기술력 평가를 강화함.
- 나. 설계등 용역업체 및 책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사전자격심사(PQ)의 내실화를 위하여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일정범위의 상하한치를 두어 발주청별로 용역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다. 용역업체의 기술력 평가를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대상사업을 현행 5억원이상 기본설계 또는 10억원이상 실시설계에서 5억원이상 기본설계 또는 10억원 이상 실시설계중 PQ대상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한정하여 기술경쟁체제를 내실화함.
- 라. 프리랜서 기술자제도를 도입하여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건설 기술자도 설계 등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기술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 함.
- 마.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벌점부과대상을 설계 및 감리용역은 1.5억원이상에서 2억원이상으로, 건설공사는 5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내실화함.
- 바. 설계용역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당해 용역준공시 평가하도록 하던 것을 기본설계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에, 실시설계는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 실시하도록 함.
- 사. 우수업체 지정범위를 우수용역업체는 대상업체의 5%이내에서 10% 이내로, 우수건설업체는 대상업체의 20%이내에서 10% 이내로 조정하여 내실화함.

주택회보